

Samjong Focus

트럼프 OBBBA 세법 개정안과
국내 기업 고려 사항
: The One Big Beautiful Bill Act

July 2025

삼정KPMG Global Tax

—
home.kpmg/kr

The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미국의 2025년 예산조정법안 One Big Beautiful Bill Act(이하 “OBBBA”)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25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서명함으로써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동 법은 ① 기존 2017 감세안(Tax Cut and Jobs Act of 2017, TCJA) 영구화와 신규 감세 조항 신설, ② 친환경 산업 및 반도체 산업 관련 세액공제 조정, ③ 의료 및 복지 지출 삭감, ④ 국방·안보 강화를 위한 방위비 등 지출 확대, ⑤ 중국을 배제한 미국 중심 공급망 강화 등을 위한 조세·재정 정책 패키지로 구성됩니다.

동 법을 통해 약 4조 5천 억 달러의 감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 중소기업의 성장 및 내수 경제 활성화, 미국 제조업과 에너지 부문의 경쟁력 제고, 국방 강화와 불법이민 억제, 연방정부 재정·복지 구조 개편 등을 통해 단기적 미국 경기 부양 효과가 예상됩니다. 또한 부채 한도를 5조 달러 증액함에 따라 국가 부채에 대한 채무 불이행 우려를 피했지만, 중장기적으로 연방 정부의 재정 건전성 악화, 인플레이션 압력과 정부지출 증가가 이자율 상승을 유발해 민간투자를 감소시키는 구축효과, 소득불평등 심화 등에 대한 우려도 상존합니다.

특히, OBBBA는 반도체·전기차·태양광·방위·헬스케어 산업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 등을 중심으로 보조금·세액공제와 정부 예산 조정, 동맹국 중심 공급망 재편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현지법인 운영·투자·공급망 등 사업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구분	주요 내용
감세	2017 감세안(Tax Cut and Jobs Act of 2017, TCJA) 확대 및 영구화 - 신규 감세 조항 신설
산업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친환경 지출 예산 감축 -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의료·복지	- 저소득층 영양보충 지원 프로그램(SNAP) 수급 조건 강화 - 메디케이드(Medicaid) 등 의료 관련 복지 축소
국방·안보	국방·안보·방위비 지출 확대
공급망	금지외국기관(PFE) 요건을 통한 미국 공급망 내 중국 등 배제

- 미국 근로자 등 중산층과 지역사회 보호
- 미국 제조업 부흥과 중소기업 등 경쟁력 강화
- 의료비·복지 지출 구조조정과 효율화
- 미국 투자와 일자리 확대 및 규제 완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 미국 경제안보 강화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1] OBBBA 법안 주요 내용

1. 감세: TCJA 확대 및 영구화, 신규 감세 조항 신설

OBBBA는 개인에 대해 TCJA에서 인화된 개인소득세율 영구화, 표준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확대 및 영구화 방침과 더불어 팀·초과근로수당·자동차 할부 이자에 대한 비과세, 주 및 지방세(SALT) 공제 한도 상향 조정 등의 신규 감세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관련하여 동 법은 TCJA에서 인화된 법인세율(35%→21%) 영구화, 장비투자액 전액에 대한 즉시 공제, 미국 내 R&D 비용에 대해 즉시 비용 처리 허용 및 영구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세를 통해 중산층의 소득 증대와 소비 진작,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목적을 지닙니다.

더불어 TCJA를 통해 시행된 침체지역 대상 기회구역(Opportunity Zones) 설정 확대 및 영구화, 적격 중소기업 주식(Qualified Small Business Stock, QSBS) 양도차익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기준 하향 조정 등의 정책을 도입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경제 및 중소기업을 육성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개인 소득세	• 현행 과세구간 7단계 유지 및 최고세율 인하(39.6%→37.0%) 영구화 (2026년 시행)			
	구간	종전(TCJA 이전) 세율	TCJA 세율	OBBBA 확정세율
	1	10%	10%	10%
	2	15%	15%	15%
	3	25%	22%	22%
	4	28%	24%	24%
	5	33%	32%	32%
	6	35%	35%	35%
	7	39.6%	37%	37% (영구화)
	• 표준공제 확대(독신 \$8,300→\$16,300 / 가구주 \$12,150→\$24,500 / 부부 \$16,600→\$32,600), 자녀세액공제 확대 및 기타 부양가족 세액공제 영구화			
법인세	• 상속세, 증여세 기본 공제액 상향 조정 및 영구화			
	• 주택모기지 이자 공제 한도, 신규주택구입 세액공제, 은퇴저축공제(IRA, 401k 등) 항목 영구화			
	• 팀 소득, 초과근무 수당, 자동차 할부이자 비과세 공제 신설, 시니어 공제 확대			
	• 주 및 지방세 공제(State and Local Taxes, SALT) 한도 상향 조정(\$10,000→\$40,000)			
	• 트럼프계좌(미성년자 대상) 신설			
	• TCJA 법인세율(21%) 영구화			
	• 신규 기계장치 등 장비투자액 당해 100% 감가상각 허용, 미국내 R&D 금액 전액 비용 처리와 영구화			
	• 이자비용 공제 과세대상 소득 기준 변경 (현 EBIT의 30%→EBITDA의 30%)			
	• 적격사업소득(Qualified Business Income) 및 개인사업자·패스스루(Passthrough) 사업자 소득 20% 공제 영구화			
	• TCJA를 통해 시행된 침체지역 대상 기회구역(Opportunity Zones) 설정 확대 및 과세이연 적용 등 영구화			
	• 신규 취득 적격 중소기업 주식(Qualified Small Business Stock, QSBS) 양도차익 면세 보유 기간 (5년→3년) 완화 및 한도 확대			

Source: Ways & Means Committee(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The One Big Beautiful Bill(July 2025)”,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2. 산업: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대폭 축소,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환도 상향 조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세액공제의 수혜기간이 축소 또는 폐지되고 수혜 요건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신차 최대 7,500달러)는 2025년 9월 30일부터 조기 종료되며, 첨단제조 세액공제, 수소 및 청정전기 생산 세액공제 등 관련 지원이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반면 미국 내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기존 25%에서 35%로 상향 조정됩니다.

구분	주요 내용
IRA 관련 신재생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및 일정 단축	- 전기차(EV)·배터리 등 친환경 차량 2025년 9월 30일 세액공제 폐지 - 풍력 부품 세액공제 폐지(~2027년 말), 배터리·태양광 부품 세액공제 점진적 축소 및 폐지(~2032년 말), 핵심광물 세액공제 점진적 폐지(~2033년 말) - 태양광·풍력 발전 세액공제 2027년까지 가동한 기업만 혜택 - 원자력, 지열, 수력, 에너지저장 생산 세액공제 2033년부터 단계적 축소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2026년까지 미국 내에 신규 공장을 착공 시, 첨단제조투자세액공제(Advanced Manufacturing Investment Credit) 공제율 상향조정 (25%→35%)

Source: Ways & Means Committee(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The One Big Beautiful Bill(July 2025)”,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3. 복지: 의료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 구조조정 등을 통한 재정지출 효율화

메디케이드(Medicaid) 관련 일반 성인 수급자에게 월 80시간 이상 근로 등을 요구하는 등 지원 요건을 높이고 오바마케어 관련 소득 요건을 강화하는 조치를 통해 의료 지출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푸드스탬프(SNAP) 수급 대상자를 이민자 등 합법적 신분자로 제한하며, 기존 55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존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근로 의무를 부과하는 등 수혜 자격을 엄격하게 하여 복지 프로그램의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지출 감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의료 복지 축소	- 메디케이드(Medicaid) 수급자 관리 체계 강화, 남용 방지, 본인 부담금 상향, 월 80시간 이상 근로 등 일정 요건 강화 및 비용 부담 요건 확대 등 (2027년 1월 1일 이후 시행) - 오바마케어 소득 요건 강화 및 본인부담금 상향, 신분 검증 강화로 허위 수급 차단
푸드스탬프 (SNAP) 축소	-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대상자 근로 요건 확대, 수혜대상 연령 요건 강화 (55세 미만→65세 미만) - SNAP 수급 대상에서 이민자 등 일부 합법 신분자로 제한

Source: Ways & Means Committee(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The One Big Beautiful Bill(July 2025)”,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4. 국방·안보: 국방비 예산 대규모 증액

국방과 안보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 규모를 크게 증액하였습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총 1,56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해군 함정 건조,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군수품, 첨단 무기 개발, 핵무기 및 전략자산 현대화 등 국방 업 기반과 첨단 전력 증강 등에 국방비 예산 중 절반 이상이 배정되었습니다. 안보와 관련하여 국경 장벽 건설, 불법 이민자 구금 시설 확충, 국경 감시 장비 및 기술 현대화 등을 위해 총 1,707억 달러 예산이 배정되는 등 안보 예산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국방	국방비 약 1,560억 달러(FY2025~2034) 추가 예산 배정. 해군 함정 건조, 첨단무기 개발 프로그램, 미사일 방어시스템 등 대형 전력 증강 프로그램에 추가 예산 중 절반 이상 배정
안보	국경 장벽 건설과 첨단 감시 솔루션 현대화, 불법 이민자 구금 시설 확충, 이민세관단속국 활동 강화 등 국토안보 강화를 위해 총 1,707억 달러(FY2025~2029.9)를 배정

Source: American Immigration Council(미국 이민 협의회) “What’s in the 2025 Reconciliation Bill So Far?(July 2025)”, “What’s in the Big Beautiful Bill? Immigration and Border Security Unpacked(July 2025)”, 삼정KPMG 경제연구원

5. 공급망: 중국 등 미국 내 공급망 배제 등 대중국 규제 방침

OBBBA는 ‘금지외국기관(Prohibited Foreign Entity, PFE)’ 요건을 도입하여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금지외국기관(PFE)은 미국 내 세제혜택을 받는 사업에서 엄격하게 배제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금지외국기관(PFE)으로부터 제공받는 원자재·부품 등의 비용 비율이 해당 제품의 분야별 적격 비용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 실질적 지원에 해당되어 세액공제 등 혜택이 박탈됩니다. 이는 미국 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중국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트럼프의 정책 기조가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구분	주요 내용
금지외국기관(Prohibited Foreign Entity, PFE) 신설 및 강화	- 금지외국기관(PFE)은 ‘특정외국기관(Specified Foreign Entity, SFE)’ 또는 ‘외국영향기관(Foreign Influenced Entity, FIE)’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 특정 국가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기업이나 단체 - PFE에 해당 또는 PFE로부터 어떠한 실질적 지원(material assistance)을 받는 경우, 청정연료 생산세액공제, 청정전력 생산 및 투자 세액공제, 첨단제조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 적용 배제 - 실질적 지원(material assistance)의 기준은 Material Assistance Cost Ratio(MACR) 계산에 의거 - MACR 비율 = (T-P)/T*100 - MACR 비율이 정규가 규정(임계치)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배제 - 임계치는 정책별·연도별로 다르게 설정됨

Source: KPMG US “Incentives and credits tax provisions in ‘One Big Beautiful Bill’(July 2025)”, Bipartisan Policy Center “Unpacking the FEOC Provisions in the Senate Finance Reconciliation Bill”(03, July 2025)”,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T는 전체 원자재·부품·서비스 비용, P는 PFE로부터 조달 받은 소재 원자재·부품·서비스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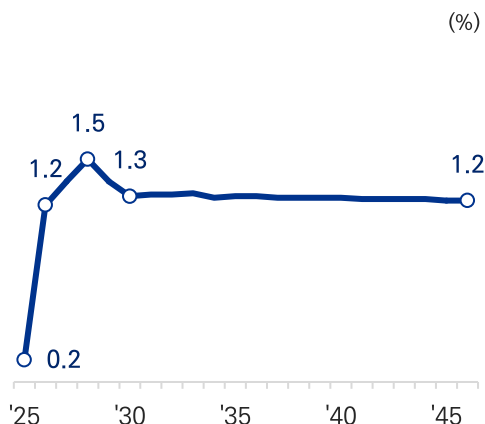
[2] OBBBA가 미국 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기업 대응 방향

OBBBA에 따른 감세로 인해 미국 가구 소득과 소비 증가, 민간투자 확대, 고용 확대 등을 통해 전반적으로 경기 부양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와 금리 상승 압력은 구축효과를 초래하여 민간 투자를 위축할 소지가 있으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높습니다. Tax Foundation은 감세로 인해 Baseline 대비 미국 GDP가 2025년 0.2%에서 2028년 1.5%로 높아지나 2029년부터 구축효과가 발생해 성장률 제고 효과는 낮아지고, 중장기적으로 GDP를 1.2%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025~2034년 중 추가적인 연방정부 세수 규모는 약 5조 달러(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분 등 동적효과 고려 시 4조 달러)로 예상되며 순지출 감소분(1.1조 달러)을 포함 시 향후 10년 간 총 재정적자 증가 규모는 3.0조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6~2027년 미국 감세 및 지출 확대로 미국 성장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되나, 관세 부과가 이를 상쇄할 소지가 있으며,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재정적자 확대에 의한 국채 발행 증가는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여 차입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잉여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유입되어 실물과 금융 간 괴리 확대 또는 높은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관세 등에 따른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국채 수급 부담으로 국채 금리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은 금리·환율 변동성에 대한 헤지 전략, 자본비용 관리 및 차입 구조 최적화, 현금 흐름 및 비용 구조 강화, 중장기 리스크 점검과 시나리오 분석에 따른 자금 전략 등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OBBBA 통과에 따른
Baseline 대비 GDP 성장률



OBBBA 통과에 따른 경제적 영향 추정 (증감분)

GDP	+1.2%
자본소득	+0.7%
세전급여	+0.4%
전일제 근로자 수	+938,000명
전통적 세입 규모 (2025~2034)	- 5조 413억 달러
동적 세입 규모 (2025~2034)	-4조 1,044억 달러
지출삭감 포함 동적 재정적자 규모 (2025~2034)	3조 361억 달러

Source: Tax Foundation(2025.7.4) “One Big Beautiful Bill Act” Tax Policies: Details and Analysis”,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동적 추정은 세제 변화로 거시경제 변수와 경제 주체의 변화 등의 변화 등을 반영해 추정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세율 1% 인하 시, 세수 감소분만 아니라 이로 인한 소비 증가와 소득 증가 등에 따른 경제적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함

[3] OBBBA에 따른 국내 산업별 대응 방향

OBBBA는 트럼프 대통령의 “Make America Great Again”의 연장선상에서 중국 등을 견제하며 미국산 재화·서비스를 사용해 자국 내 생산 기반과 공급망 구축을 위한 다수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생산·투자, 첨단 제조,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100% 보너스 감가상각, R&D 즉시 비용 처리 등)를 영구화하는 동시에 친환경·전기차 인센티브 축소, 북미 내 생산·조달 요건 강화와 더불어 관세 정책 등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에 단기·중장기 모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① 세제 혜택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 순위 재조정 및 세제 최적화를 위한 사업·투자전략 재검토, ② 주요 부품·원자재의 비용 구조와 공급망을 고려한 생산거점 및 구매 전략 재정비와 공급망 다변화, ③ 관세·통상 규제 변화 모니터링과 시나리오별 수출전략 재설계, ④ 미국 자회사 및 글로벌 그룹 전체의 세무전략·회계관리 체계 재정비와 조세 정책(GILTI, BEAT 등)·컴플라이언스 체계화 등의 대응 방안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업종별로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만큼, 아래와 같이 기업별 맞춤형 대응 전략 수립도 필요합니다.

OBBBA 통과에 따른 산업별 전망과 대응 방향	
반도체	- 미국 내 설비 투자 등에 대한 효과 분석과 이에 기반한 장기 투자 계획·생산거점 전략 재정비 - 첨단제조 투자세액공제 확대(2026년까지 착공분)를 고려한 신속한 대응과 인허가 추진 - 반도체 보조금·대출지원 유지 전망. 그러나 개별 기업별 보조금 규모나 조건 변경의 불확실성 상존 - 장기적 공급 계약 및 미국 로컬 파트너십 확대, 중국 등 글로벌 사업 전략 재검토
전기차·배터리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조기 종료에 따른 전기차 및 배터리 수요 감소 가능 - 자동차 시장 포트폴리오 재분석 및 하이브리드차 판매 확대 등 판매 전력 재검토 - 중국산 배터리 대체재로 한국산 배터리 수요 확대 가능하므로 판매 전략 정비 - 배터리의 경우, 핵심 소재 관련 금지외국기관(PFE) 가능성을 고려한 공급망 리스크 체계적 관리
태양광·재생에너지	- 재생에너지 인센티브가 단계적으로 축소로 미국 현지 프로젝트 수익성 악화 및 수출 확대 제약 - 인센티브 종료 시점 고려한 프로젝트의 조기 완공 추진 -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유럽 등지로의 다변화 방안 모색
방위	- 미국 국방 예산 확대와 동맹 중심 공급망 강화 기조 속 미국 내 방산수요와 동맹국에 대한 무기지원 수요 확대 가능 - 미사일 방어 및 첨단 무기체계, 핵전력 현대 등의 영역은 외국기업으로 직접적 수주는 제한될 수 있으며, 드론을 비롯하여 무인시스템 등 무기지원·자율 영역에서 수혜 가능성 상존 - 미국 중심 방산 공급망 편입 기반 구축 및 직접적 진출을 위한 미국 현지법인·JV 등을 통해 제도 장벽 해소, 현지 생산·유통체계 구축 등의 중장기적 전략 필요
헬스케어·제약	- 정부 의료·복지지원 예산 삭감으로 미국 내 공공조달 축소 및 의약품 수요 소폭 감소 가능 - 고부가가치 신약, 희귀질환 치료제 등 차별적 시장 전략 및 R&D 투자 우선순위 조정 - 보험·공공환자 영역 외 민간시장진출과 프리미엄 전략 확대, 해외시장 다변화 방안 모색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The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주요 세법 내용

지난 2025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One Big Beautiful Bill Act (이하 “OBBBA”) 법안이 정식 법률로 발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도입된 감세 정책을 연장하는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대폭 축소하고, 기업의 미국 내 투자 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세 정책을 개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많은 우려를 낳았던 Pillar 2 도입 국가 투자자에 대한 Section 899(보복세) 신설 조항은 최종적으로 철회¹⁾ 되었습니다.

이번 OBBBA에 포함된 주요 세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전기차 세액공제 및 태양광·풍력 발전 생산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등 주요 청정에너지 관련 세제 혜택의 조기 일몰을 추진
- ✓ 이자비용 공제 한도의 산정 기준을 EBIT에서 EBITDA로 변경하고, 적격 자산에 대한 100% Bonus Depreciation(일시상각) 제도를 재도입했으며, 미국 내 R&D 비용에 대한 자본화 요건을 삭제하여 미국 내 투자를 촉진하고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제고
- ✓ 기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도입된 GILTI, FDII, BEAT 등 주요 국제조세 제도를 일부 개정하여 재조정

본 보고서는 OBBBA에 담긴 주요 세법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특히 미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1) Section 899 (보복세) 조항은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 “DST”)나, 글로벌최저한세 규정 중 소득산입보완규칙(Undertaxed Profits Rule, “UTPR”)처럼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외국 세금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OBBBA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앞서 언급한 제도를 도입한 국가에 소재한 기업이나 국민에게 지급되는 미국 원천소득에 대해 최대 15%의 원천징수세가 추가로 부과하는 법안이었으나, 2025년 6월 28일 G7 협의를 통해 미국에 모기업이 둔 그룹(US Parented Group)에 대해서는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을 면제하는 것에 합의하고 미국은 Section 899 (보복세) 조항을 OBBBA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지난 KPMG삼정의 Global Tax Brief 7월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ax Newsletter – KPMG 한국](#))

1. 세액공제 관련 개정

(1) 세액공제 관련 주요 개정사항

기존 바이든 정부에서 도입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의 친환경 세제혜택(세액공제)의 상당 부분은 그 혜택 내용이 변경되거나 예정보다 조기에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구매에 대해 부여되던 세액공제(Section 30D / 45W)는 2025년 9월 30일 이후 구매분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기존 CHIPS Act에 따른 반도체 등 첨단제조 투자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존 25%에서 35%로 상향되었으며, 당초 관심을 모았던 세액공제 양도 제한 및 폐지에 관한 규정은 최종적으로 철회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액공제 관련 주요 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	현행세법	개정세법
Section 48D (반도체 등 첨단제조 투자 세액공제) -CHIPS Act	• 적격 첨단 제조 시설 투자비용 25% 공제	• 2026년 이후 가동되는 적격 첨단 제조 시설 투자비용 35% 공제
Section 45Y (청정 전력 생산 세액공제)	• 적격 시설 설치 후 10년간 공제 혜택 • 전력량 기준 기본 \$0.003/kWh 공제 • PWA 요건(Prevailing Wage and apprenticeship requirements)² 충족 시 \$0.015/kWh 공제 • 일몰기한: 다음 중 늦은 연도부터 4년간 점진적 축소 및 폐지 - 미국 내 전력 생산으로 인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2년 배출량의 25% 이하에 도달한 연도 - 2032년	• 풍력, 태양광 관련 일몰 조기 종료 및 기타 적격설비에 대한 일몰기한 기준 일원화 (풍력, 태양광 에너지 생산) 법안 시행 후 12개월 이내에 건설을 시작한 경우 또는 2027년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개시된 경우에만 가능 (기타 적격 설비) 2032년부터 4년간 점진적 축소 및 폐지 • 금지외국기관 제한규정(Prohibited Foreign Entity Rule) 도입 - 아래 참조

주요 내용	현행세법	개정세법
Section 48E (청정 전력 투자 세액공제)	• 적격 투자액의 6% 공제 • PWA 요건(prevaling wage and apprenticeship requirements)² 충족 시 30% 공제 • 에너지 커뮤니티에 위치하거나 국산 부품 사용시 각 추가 10% 공제 (최대 50%) • 일몰기한: 다음 중 늦은 연도부터 4년간 점진적 축소 및 폐지 – 미국 내 전력 생산으로 인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2년 배출량의 25% 이하에 도달한 연도 – 2032년	• 풍력, 태양광 관련 일몰 조기 종료 및 기타 적격설비에 대한 일몰기한 기준 일원화 (풍력, 태양광 에너지 생산설비) • 법안 시행 후 12개월 이내에 건설을 시작한 경우 또는 2027년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개시된 경우에만 가능 (기타 적격 설비) • 2032년부터 4년간 점진적 축소 및 폐지 • 금지외국기관 제한규정(Prohibited Foreign Entity Rule) 도입 – 아래 참조
Section 45X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 특정 청정에너지 부품의 미국내 비특관자 간 생산 및 판매에 대해 세액공제 • 점진적 공제 혜택 축소 (2030년 75%, 2031년 50%, 2032년 25%, 이후 0%) • (핵심광물) 점진적 축소 대상에서 제외	• 세액공제 점진적 축소 대상 및 일정 변경 (풍력 에너지 부품) 2027년12월 31일 이후 공제 적용 불가 (핵심광물) 2031년~2033년 동안 점진적 축소 후 폐지 (기타 적격 설비) 현행과 같이 2030년 ~ 2032년까지 점진적 축소 후 폐지 • 핵심광물 범위에 제련용 석탄(metallurgical coal) 추가 • 1차 부품(initial eligible component)와 2차 부품(secondary component)가 동일 제조시설에서 생산될 경우, 2차 세액공제 요건 추가 • 금지외국기관 제한규정(Prohibited Foreign Entity Rule) 도입 – 아래 참조

Source: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 삼정KPMG Global Tax

주2) Prevailing Wage and Apprenticeship requirements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에서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예: PTC, ITC, 45Q, 45Y 등)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으로서 근로자의 권익 보호, 숙련 인력 양성, 지역 임금의 균형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동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노동부가 정한 통상 임금(prevaling wages)을 시설의 건설, 변경 또는 수리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전체 노동 시간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자격을 갖춘 견습공(apprentice)이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견습공 요건 관련해서는 견습공 대 숙련공 비율 규정을 따라야 하며, 4명 이상 작업 인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최소 1명의 공인 견습공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반도체 등 첨단제조 투자 세액공제 (Section 48D) – CHIPS Act

미국 내에서 반도체 등 첨단 제조시설에 대해 투자한 금액 중, 해당 시설의 운영에 필수적인 자산에 대한 투자액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투자액의 일정 비율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허용됩니다. 특히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25%였던 세액공제율이 3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 청정 전력 생산 세액공제 (Section 45Y)

Section 45Y는 납세자가 적격 청정에너지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비특수관계인(unrelated person)에게 판매하는 경우, 해당 설비의 가동(placed in service) 시점부터 10년간 생산세액공제(Production Tax Credit, PTC)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현행세법에서는 해당 세액공제는 (1) 미국 내 전력 생산으로 인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2년 배출량의 25% 이하에 도달한 연도 또는 (2) 2032년 중 늦은 연도부터 4년간 공제율이 점진적 축소 및 폐지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OBBBA 법안에서는 풍력, 태양광 에너지 생산설비에 대하여 동 법안 시행 후 12개월 이내에 건설을 시작한 경우 또는 2027년12월 31일까지 설비의 사용이 개시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그 외 설비에 대해서는 2032년부터 세액공제가 점진적 축소 및 폐지될 예정입니다.

또한, 해당 청정에너지 설비가 금지외국기관(PFE: Prohibited Foreign Entity) 으로부터 물질적 지원(material assistance)을 받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구체적인 요건은 별도 PFE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청정 전력 투자 세액공제 (Section 48E)

Section 48E는 과세연도 중에 사용이 개시된(placed in service) 적격 시설에 대해 투자액의 6%의 투자세액공제(ITC, Investment Tax Credit)가 허용되고, PWA 요건(Prevailing Wage and Apprenticeship requirements)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율이 30%로 확대됩니다.

또한, 앞서 설명한 Section 45Y에 따른 세액공제와 동일하게, Section 48E에 따른 세액공제 역시 (1) 미국 내 전력 생산으로 인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2년 배출량의 25% 이하에 도달한 연도 또는 (2) 2032년 중 늦은 연도부터 4년간 공제율의 점진적 축소 및 폐지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OBBBA법안에 따르면 풍력, 태양광 에너지 생산설비에 대해서는 동 법안 시행 후 12개월 이내에 건설을 시작한 경우 또는 2027년12월 31일까지 설비의 사용이 개시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그 외 설비에 대해서는 2032년부터 세액공제가 점진적 축소 및 폐지될 예정입니다.

또한 금지외국기관(PFE, Prohibited Foreign Entity)으로부터 물질적 지원(material assistance) 받는 시설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PFE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Section 45X)

Section 45X는 특정 적격 부품의 미국 내 생산 및 판매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하며, 이러한 적격 부품에는 풍력, 배터리, 태양광 관련 부품 뿐만 아니라, 특정 핵심 광물(critical minerals)도 포함됩니다.

현행세법상 대부분의 적격 부품 생산에 대한 Section 45X세액공제는 2030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되지만, 핵심 광물 생산에 대해서는 단계적 축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OBBBA 법안에서는 세액공제의 단계적 축소 일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 (1) 풍력 에너지 부품에 관한 세액공제는 2027년 이후 적용되지 않고;
- (2) 핵심 광물(critical minerals) 세액공제는 2031년 생산된 광물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되며;
- (3) 그 외 생산과 판매에 대한 세액공제는 현행과 같이 2030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

또한 1차 부품(initial eligible component)와 2차 부품(secondary component)이 동일 제조시설에서 생산될 경우 2차 부품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2차 부품의 직접 재료비의 최소 65%가 미국에서 생산 또는 제조된 부품들에 의해 구성되어야 합니다.

한편, Section 45X 세액공제는 법안 시행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PFE(금지외국기관) 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PFE 외 기업들에 있어서도 세액공제 대상 부품 등을 구성하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재료비 중 PFE로부터 조달한 부분의 비율이 특정비율(threshold ratio)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도별·부품별 특정비율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품]

연도	2026	2027	2028	2029	그 이후
태양광 부품	50%	40%	30%	20%	15%
풍력 부품	15%	10%	N/A	N/A	N/A
인버터	50%	45%	40%	35%	30%
배터리 부품	40%	35%	30%	20%	15%

Source: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 삼정KPMG Global Tax

[핵심광물]

연도	2026~2029	2030	2031	2032	그 이후
핵심광물	제한없음	75%	70%	60%	50%

Source: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 삼정KPMG Global Tax

(2) 금지외국기관(Prohibited Foreign Entity, PFE) 제한 규정

OBBBA 법안은 기존의 ‘해외우려단체(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와 유사한 ‘금지외국기관(PFE, Prohibited Foreign Entity)’ 요건을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PFE나 PFE와 거래가 있는 단체 등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제한됩니다.

금지외국기관(PFE)에는 특정외국기관(Specified Foreign Entities, SFE) 및 외국영향기관(Foreign Influenced Entities, FIE)가 포함됩니다.

특정외국기관(SFE)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민 및 국적법」 제219조(8 U.S.C. 1189)에 따라 국무장관이 외국 테러 기관으로 특정한 기관
-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관리하는 특별 특정 국민 및 차단 대상자 명단(SDN List)에 포함된 기관
- 미국 법무장관에 의해 특정 국가안보법 위반 활동에 연루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주장된 기관
- 2021년 국방수권법(NDAA) 제1260H조에 따라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중국 군사 관련 기업
- 신장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명단에 포함된 기관
- 특정 중국계 배터리 제조업체
- 외국지배기관(FCE, Foreign Controlled Entity)*

*외국지배기관(FCE)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특정 국가(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의 정부
- 특정 국가의 정부 기관 또는 산하기관
- 특정 국가의 시민 또는 국민인 개인
- 특정 국가에서 설립되었거나 조직되었거나, 본점(본사)을 두고 있는 단체 또는 사업 부문
- 또는 위에 언급된 자들에 의해 지배((법인의 의결권 또는 주식 가액의 50% 이상, 또는 조합 지분·수익권의 50% 이상을 보유한 경우)되는 모든 단체
- 단, 상장된 거래소 또는 시장이 특정 국가의 법률에 따라 설립·조직되었거나, 특정 국가에 본점을 두고 있는 경우, 또는 하나 이상의 특정 외국단체(SFE) 또는 외국지배기관(FCE)이 해당 상장 기업의 50% 이상을 지배하는 경우가 아닌 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제외됨

한편, 외국영향기관(FIE)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SFE가 해당 기관의 이사 또는 임원 등 핵심 인사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우
- 단일 SFE가 해당 기관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
- 복수의 SFE가 총합 40% 이상을 소유한 경우
- SFE가 보유한 부채가 해당 기관 전체 부채의 15% 이상인 경우
- SFE에게 해당 지불(applicable payment)이 이루어지고, 그 지불이 자격을 갖춘 실질적인 통제권을 부여하는 계약, 합의 또는 기타 약정을 근거로 한 경우
- 특정 외국 기관(SFE)에게 설비, 에너지 저장 기술, 또는 적격 구성요소의 생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부여하는 계약, 합의 또는 기타 약정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PEF 관련 제한 규정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1. 법인 관련 규정(Entity-level rules) – 납세자가 특정 외국 기관(SPE) 또는 외국영향기관(FIE)에 해당할 경우 청정 에너지 세액공제(Section 45Y, 48E, 45X, 45Q, 45U, 45Z)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2. 지급 규정(Payment rules) – 납세자가 특정 외국 기관(SFE)에게 실질적 통제력(effective control)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되는 지급을 하는 경우, Section 45Y, 48E, 45X 세액공제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최대 10년 전까지 소급하여 48E 세액공제를 전액 반환(100% Recapture Rule)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물질적 지원 규정(Material assistance rules) – 납세자가 운영하는 시설(Section 45Y, 48E 관련)에 사용된 제조 제품이나 부품의 원재료를 금지외국기관(PFE)으로부터 일정 비율 이상 조달한 경우, 관련 세액공제의 적용이 제한됩니다. (해당 비율은 세액공제 종류나 산업별로 상이하며, 매년 단계적으로 증가함)

세액공제별 PFE 제한 규정에 따른 적용 내용 및 시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세액공제 제한 적용 시기]

연도	특정 외국 기관(SFE)*	외국지배기관(FIE)	물질적 지원 규정
45Y/48E	2026년	2026년	2026년
45X	2026년	2026년	2026년
45Q	2026년	2026년	해당사항 없음
45U	2026년	2028년	해당사항 없음
45Z	2026년	2028년	해당사항 없음

Source: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 삼정KPMG Global Tax

Note*: 개정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 2026년부터

(3) 기타 세액공제 일몰기한 변경

OBBBA 법안에 의해 일몰기한이 단축되거나 새롭게 일몰기한이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Sec.	세액공제	현행세법상 일몰기한	개정세법 일몰기한
25C	Energy Efficient Home Improvement Credit	2032/12/31	2025/12/31
25D	Residential Clean Energy Credit (주택 태양광 패널 설치 비용에 30% 세액공제)	2034/12/31	2025/12/31
25E	Previously-Owned Clean Vehicle Credit (중고 전기차)	2032/12/31	2025/9/30
30C	Alternative Fuel Vehicle Refueling Property Credit	2032/12/31	2026/6/30
45L	New Energy Efficient Home Credit	2032/12/31	2026/6/30
45W	Qualified Commercial Clean Vehicles Credit (상업용 전기차)	2032/12/31	2025/9/30
30D	Clean Vehicle Credit (전기차 신차)	2032/12/31	2025/9/30
179D	Energy Efficient Commercial Building Deduction	영구적 혜택	2026/6/30

Source: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 삼정KPMG Global Tax

2. 미국 법인세 관련 개정

미국 법인세 관련 주요 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	현행세법	개정세법
이자비용 공제 한도 변경 (Section 163(j))	EBIT x 30%	EBITDA x 30%
Bonus Depreciation 영구화 (Section 168(k))	(적격 고정자산) 취득연도 일시상각 비율 점진적 축소 및 폐지 (2022년까지 100%, 2023년 80%, 2024년 60%, 2025년 40%, 2026년 20%, 2027년 이후 일몰)	(적격 고정자산) 2025년 1월 19일 이후: 취득연도 일시상각 100% 영구화 (신규) 2025년 1월 19일 이후부터 2029년 전까지 공사 시작, 2031년까지 생산/제조 시작하는 적격 부동산(Qualified Production Property, QPP): 100% (기존 39년 상각자산)
적격자산 손금산입 한도 인상 (Section 179)	2025년 기준 \$1.25M 한도 (단, 투자액이 \$3.13M 초과시 초과 금액만큼 한도액 감소)	2026년 기준 \$2.5M 한도 (단, 투자액이 \$4M 초과시 초과 금액만큼 한도액 감소)
연구개발 비용 자본화 완화 (Section 174/174A)	미국내 R&D: 5년상각 해외R&D: 15년상각	미국내 R&D: 100% 공제 (과거연도 잔여 상각비용 경우 2025년에 일시상각 또는 2026년까지 조기 상각 가능함) 해외 R&D: 15년 상각

Source: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 삼정KPMG Global Tax

1) 이자비용 공제 한도 기준 변경 (Section 163(j))

당해 연도의 순이자비용(비특수관계자 지급분 포함)의 공제한도의 기준이 되는 소득(Adjusted Taxable Income, ATI)을 산정하는 방법이 현행 세법상 EBIT(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에서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로 변경됩니다. 해당 소득의 30%까지 순이자비용 공제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무기한 이월되어 이후 과세연도의 공제 한도 내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2) Bonus Depreciation (Section 168(k))

내용연수가 20년 이하인 적격 고정자산(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고자산 포함)에 대해, 해당 자산을 취득한 사업연도에 세무상 취득가액의 100%를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시상각(Bonus Depreciation)이 허용됩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2023년 이후 기간에 대해 일시상각 한도를 점차적으로 축소, 제한해 왔으나 (2025년 기준 40%), OBBBA에서는 취득가액의 100%를 일시에 상각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생산 및 제조업 관련 분야의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Qualified Production Property(QPP) 자산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39년 동안 감가상각되던 비주거용 부동산(Non-Residential Real Property) 중 생산 및 제조가 이루어지는 자산에 대해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100%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하도록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적격자산 손금산입 한도 인상 (Section 179)

사업 초기에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투자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한도 내에서 취득 연도의 비용으로 즉시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혜택입니다. 적격자산에는 일반적으로 기계장비, 컴퓨터 및 주변기기, 사무용 가구 및 비품, 업무용 차량 등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유형자산이 포함됩니다.

Section 179에 의한 손금산입은 연도별 한도가 존재하는데, 2025년 기준 \$1.25M까지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기업의 해당 연도 투자금액이 \$3.13M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 만큼 손금산입 한도가 줄어듭니다

OBBBA법안은 Section 179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를 \$2.5M로 증가시키는 한편, 손금산입 한도를 감소시키는 투자규모의 기준도 \$4.0M으로 인상하였습니다.

4) 연구개발 비용 자본화 완화 (Section 174/174A)

미국 내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비용은 해당 발생 연도에 전액(100%)을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으며, 과거 연도에 자본화하여 아직 상각하지 않은 잔여 비용은 2025년에 일시 상각하거나, 2026년까지 조기에 상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해외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자본화는 현행세법과 같이 계속 15년에 걸쳐 안분 상각해야 합니다.

3. 국제조세 관련 개정

국제조세 관련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	현행세법	개정세법
GILTI(NCTI) (Section 951A)	GILTI income에 대응되는 Section 250 공제 비율: 50% GILTI 관련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비율: 80% GILTI 관련 유효세율 13.125%(미국 법인세율 21% x (100% - 50%)/80%)	명칭 변경 (GILTI → NCTI) 2026년 이후 GILTI income에 대응되는 공제 비율을 40%로 변경 2026년 이후 GILTI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비율 90%로 상향 2026년 이후 유효세율 14% (미국 법인세율 21% x (100% - 40%)/90%) Net deemed tangible income return (NDTIR, QBAI x 10%) 차감 삭제
FDII(FDDEI) (Section 250A)	FDII 공제율(deduction rate): 37.5% FDII 유효세율: 13.125% (미국법인세율 21% x (100% - 37.5%))	2026년 이후 FDII 공제율(deduction rate): 33.34%로 변경 FDII 유효세율: 13.9986% (미국법인세율 21% x (100% - 33.34%)) Deemed Tangible Income Return (DTIR, QBAI x 10%) 차감 삭제
BEAT (Section 59A)	BEAT 세율: 10%	2026년 이후 BEAT 세율: 10.5%

Source: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 삼정KPMG Global Tax

1) GILTI (NCTI로 명칭 변경) 세제 관련 개정사항

2017년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시절에 제정된 TCJA(Tax Cuts and Jobs Act)에 따라, 미국주주가 보유한 특정해외자회사(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이하 US CFC³⁾) 중 해외 저세율 국가에 소재한 US CFC에 대하여 미국 모회사의 무형자산을 활용하여 창출한 소득을 미국으로 이전하지 않고 현지에 축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부터 GILTI(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여기서 무형자산 소득이란 단순히 특허권이나 지식재산권(IP)과 같은 특정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US CFC가 벌어들인 전체 소득 중 일반적인 사업 소득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까지도 미국 모회사의 무형자산을 활용해 창출된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주3) US CFC란 미국주주(U.S. Shareholders)가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총 의결권의 50%를 초과하여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해외자회사로서, 여기서 미국주주는 미국인(개인, 법인, 파트너십 등)이 외국법인의 주식이나 의결권을 10% 이상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자를 의미합니다.

GILTI 과세대상 소득을 구하는 방식은 먼저 US CFC의 순이익(Tested Income)을 구한 뒤 여기에 해당 회사들이 보유한 공장·설비 등 유형자산, 즉 QBAI(Qualified Business Asset Investment)의 10%에 해당하는 금액(Net deemed tangible income return, NDTIR)을 차감한 금액이 GILTI 소득으로 계산되며, 이렇게 계산된 GILTI 금액의 50%를 공제하여 최종 과세소득을 계산한 다음, 해당 소득에 대응되는 외국납부세액의 최대 80% 상당의 외국납부세액공제(FTC)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번 OBBBA 법안에서는 상기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장이나 설비 등 유형자산에 대한 간주이익(NDTIR, $QBAI \times 10\%$)을 차감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무형자산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삼게 되었으며 이에 걸맞게 GILTI 세제의 명칭을 NCTI(net CFC tested income)으로 변경한 바,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GILTI 세제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기업에게 적용되는 유효세율은 해외자회사(US CFC)의 소득 발생 시 미국 모기업이 미국에서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는 세율로서, 현행세법에서는 GILTI 소득(NDTIR 차감 후 소득)에 대해 13.125%의 유효세율(외국납부세액공제 효과 포함)이 적용되었으나, OBBBA 법안에서는 NCTI소득(NDTIR을 차감하지 않은 소득)에 대한 공제율 감소(50% → 40%)로 인해 간주 외국납부세액 공제율 상승(80% → 90%)에도 불구하고 유효세율이 14%로 다소 증가될 전망입니다.

2) FDII (FDDEI 로 명칭 변경) 관련 개정사항

FDII(Foreign-Derived Intangible Income) 규정은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미국에서 제공된 서비스가 해외 시장에서 판매·사용될 때 얻는 소득에 대해 감세혜택을 부여하여 미국기업의 수출을 장려하고 미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미국 외 원천소득에 대해 일정비율 공제혜택을 부여합니다.

현행세법상 FDII 공제액을 구하는 방식은, 먼저 기업이 벌어들인 일정사업 소득(Deduction-Eligible Income, DEI)에서 사업에 사용하는 유형자산(기계, 설비 등) 가액(QBAI)의 10% 상당액(Deemed Tangible Income Return, DTIR)을 공제한 소득(Deemed Intangible Income, DII)을 구한 뒤 여기에 해외 관련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곱해서FDII를 산출한 다음 FDII에 37.5%를 곱하여 최종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이번 OBBBA 법안에서는 위 GILTI(NCTI)와 마찬가지로 공제대상액에서 유형자산에 대한 간주이익인 DTIR을 차감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무형자산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제대상으로 삼게 되었으며, 이에 걸맞게 FDII의 명칭을 FDDEI(Foreign-Derived Deduction Eligible Income)로 변경하였습니다.

FDII(FDDEI)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기업의 관련 유효세율은 해외원천소득에 대해 기업이 미국에서 부담하게 되는 법인세율로서, OBBBA 법안에서는 FDII(FDDEI) 공제율을 37.5%에서 33.34%로 낮추어 FDII(FDDEI) 관련 유효세율이 13.125%에서 13.9986%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BEAT(Base Erosion and Anti-Abuse Tax) 관련 개정사항

Base Erosion and Anti-Abuse Tax(“BEAT”)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의 미국기업이 미국세제상 공제가능한 경비를 해외 관계사에 지급하는 경우 이를 ‘세원잠식 지급액’(Base Erosion Payments)으로 간주하여 일종의 최저한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BEAT 세제는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최근 3년 평균 연매출이 5억 달러 이상인 경우 및 기업의 과세소득 계산 시 공제받은 비용들 중에서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비용이 전체 비용의 3%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매출 기준 5억 달러 요건을 초과한 미국 기업이 특허 사용료(로열티), 경영지원 서비스 비용, 미국 외 본사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을 해외로 지급한 금액이 총 금액이 전체 비용의 3%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과세소득에서 해외로 지급한 비용을 가산한 소득(Modified Taxable Income, MTI)에 BEAT 세율 10%를 곱한 세액과 실제 해당 기업의 법인세 납부할 세액을 비교하여 납부할 세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행세법상 미국내 과세소득을 줄이기 위한 과도한 해외 관계사 지급 비용 방지를 위해 BEAT 계산 목적상의 세율은 현행 10% 가 적용되고 있으나, OBBBA 법안에서는 BEAT 세율을 10.5%로 소폭 인상하였으며, 이로 인해 해외 관계사에 대한 지급액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PMG Observations

- ✓ 전기차 세액공제 및 태양광·풍력 발전 생산·투자세액공제가 조기에 폐지됩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관련 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전방 수요 감소로 인해 이차전지 제조업, 에너지저장장치(ESS) 제조업 등 연관 산업의 경제성도 악화시켜 단기적인 투자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세제 혜택 종료 이전에 설비투자 및 생산시설 구축을 서둘러 단기 혜택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미국 내 주(州) 정부 및 지역 단위의 보조금이나 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세액공제 축소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 미국에 진출한 제조업 중심의 한국 기업들에게는 전반적으로 유리한 세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 내 신규 공장 설립 또는 설비투자(CAPEX) 확대를 고려 중인 기업들은 적격자산 및 미국 내 R&D 비용을 즉시 전액 비용 처리할 수 있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이자비용 공제 한도의 기준이 EBIT에서 EBITDA로 전환됨에 따라 감가상각비 비중이 높은 제조기업의 이자비용 공제 여력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반면, 미국 내 제조시설이나 연구개발 거점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세 부담과 원가 경쟁력 약화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미국 내 제조시설 확충 및 연구개발 거점 확보를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GILTI, FDII, BEAT 등 미국 세법상 국제조세제도의 개정으로 인해 미국에 진출한 한국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 부담이 일정 부분 증가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법인을 글로벌 사업 및 해외 소득 창출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여 소득과 무형자산(IP)을 미국 내에서 관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 급변하는 조세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글로벌 사업구조 재편을 통한 세부담 최소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 때 국내 본사에 미치는 우리세법에 따른 영향과 미국 및 해외세제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자료에서는 주요 내용만을 요약하였으며, 관련 세부 내용은 KPMG US 뉴스레터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KPMG reports: Tax subtitle for “One Big Beautiful Bill”](#)



Business Contacts

Global Tax Team

오상범 부대표
T 02-2112-0721
E sangbumoh@kr.kpmg.com

이성욱 전무
T 02-2112-0946
E sungwooklee@kr.kpmg.com

민우기 상무
T 02-2112-6886
E wmin@kr.kpmg.com

강성원 상무
T 02-2112-6771
E skang22@kr.kpmg.com

백천옥 상무
T 02-2112-3339
E cbaik2@kr.kpmg.com

김지연 전무
T 02-2112-0167
E jiyeonkim@kr.kpmg.com

정혜원 이사
T 02-2112-7572
E hjung2@kr.kpmg.com

home.kpmg/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